

2006 연구보고서 (수사과제)-3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을 중심으로-

윤 덕 경
김 인 숙



한국여성개발원

06

2006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윤 덕 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인 숙 (변호사)

본 연구는 주요 정책적 이슈에 대한 한국여성개발원 단기연구보고서의 일환으로 윤덕경·김인숙이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다.

발 간 사

최근 발생하였던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 인천 어린이 5명 성폭력사건 등 일련의 사건의 특징은 성폭력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 성폭력전과가 있는 등 재범자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관한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전자장치, 소위 전자팔찌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성폭력범죄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의결되었거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건의 증가와 성폭력이후 살해까지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으로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 치료, 교육이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대상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통해 보다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성폭력범죄자들을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또 성폭력범죄를 감소시킬 방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성폭력범죄의 발생에 경각심을 갖고 그 재범방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를 부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그러한 대책마련에 하나의 실마리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이후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연구과정에서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에 관해 성심껏 자문해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 면접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호관찰소, 교도소 및 NGO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6
다.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7
II. 성폭력범죄의 현황	11
1. 최근 성폭력범죄의 동향	13
가. 성폭력 발생실태(2004년 ~ 2006년 전반기)	13
나.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	14
다. 성폭력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19
2.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처리현황	21
가. 성폭력범죄의 신고현황	21
나. 성폭력범죄의 처리현황	22
III.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현황	31
1. 보호관찰	33
가. 보호관찰제도 도입의 의미	33
나. 보호관찰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34
다. 보호관찰 집행현황	36
2. 사회봉사명령	43
가.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43
나.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현황	45

3. 수강명령	50
가. 수강명령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50
나. 수강명령의 집행현황	50
IV. 현장 집행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59
1. 면접조사 개요	61
2.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62
가. 현황	62
나. 효과성	72
3. 보호관찰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76
가.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77
나. 성폭력범죄 유형별 분리교육 필요	79
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연계	79
라. 성폭력전담제 도입 필요	80
마. 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책필요	81
바. 기타 사항	81
V.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83
1. 법·제도 개선방안	85
가.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85
나. 성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86
2. 관련법의 실효성 강화방안	86
가. 수강명령집행의 실효성 강화방안	86
나.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분교육 실시 및 성폭력전담제 도입	88
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연계	88
참고문헌	91

표 목 차

<표 2-1> 성폭력사건의 발생추이	21
<표 2-2>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처분결과	23
<표 2-3> 성폭력사건 및 전체사건의 1심재판 결과	24
<표 2-4> 성폭력범죄 재범자 재범률	25
<표 2-5> 주요범죄 피의자 재범률(2004)	26
<표 2-6> 전체 사건의 제1심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비율	27
<표 2-7> 성폭력범죄관련 보호관찰 등 접수현황(2004)	28
<표 2-8> 성폭력특별법위반사건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현황(2000-2004)	29
<표 3-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2004)	41
<표 3-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소년사건 중 성폭력특별법)	42
<표 3-3>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성인사건 중 성폭력특별법)	42
<표 3-4> 성폭력사범의 재범시 죄명현황(2004)	43
<표 3-5>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회봉사명령 처분현황(2004)	48
<표 3-6>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회봉사명령의 명령 시간대별 접수현황 (2004)	49
<표 3-7>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재범현황(2004)	49
<표 3-8> 연도별 수강명령 접수 현황	52
<표 3-9> 수강명령대상자 죄명별 접수 현황(2005)	53
<표 3-10> 성폭력특별법 관련 수강명령 처분현황(2004)	53
<표 3-11> 성폭력특별법 관련 수강명령 명령 시간대별 접수현황(2004)	54
<표 3-12> 수강명령 대상자 재범현황(2004)	54
<표 3-13> 수강명령 협력기관 현황(2004.12.31 기준)	55
<표 3-14>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소년)	56
<표 3-15>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성인)	57

그림 목 차

<그림 1> 보호관찰 부과절차	37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발생하였던 초등학교 성폭력 살해사건, 인천 어린이 5명 성폭력사건 등 일련의 사건의 특징은 성폭력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고¹⁾ 석방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 성폭력전과가 있는 등 재범자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가 많다는 사실은 피의자 재범률과 관련된 통계에서,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가 2004년 6.6%에서 2005년 8.7%로 19.5% 증가하였고(경찰청 자료),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시 강간범죄자 중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3%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관한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4년 이후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되었고²⁾, 그 중 8개³⁾의 법

1) 우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려는 태도가 집행유예판결에서 나타난다. 그 예로 2005.4. 7세 여아를 추행한 한 아파트 경비원 김모(65)씨에게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5.5.에는 11세 여아를 성추행한 화물기사 최모(54)씨에게 법원은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4,000만원을 지급하고...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라고 하였고, 2005.9. 서울용산의 김모(53)씨가 여아를 성추행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렇게 풀려 난 김씨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2006.2.17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4학년 허모(11)양 살해범이다 : 조선일보 2006.2.21.

2) ①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 발의 ②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 발의 ③ 2005년 3월 8일 이계경의원 등 11인 발의 ④ 2005년 3월 25일 조배숙의원 등 21인 발의 ⑤ 2005년 3월 30일 박명광의원 등 57인 발의 ⑥ 2005년 3월 30일 손봉숙의원 등 19인 발의 ⑦ 2005년 5월 24일 박세환의원 등 25인 발의 ⑧ 2005년 6월 22일 이은영의원 등 18인 발의 ⑨ 2006년 2월 23일 문희의원 등 18인 발의 ⑩ 2006년 5월 11일 나경원의원 등 17인 발의

4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을 단일법안으로 제출, 의결하였다(2006.10)⁴⁾. 교도소에서는 2006년 교도소 사상 처음으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의 약물치료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⁵⁾.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자들, 예컨대 반사회적 인격장애(psychopath)를 가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처우문제도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재범성향이 강한 성폭력범죄자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교육, 치료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성폭력범죄 예방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⁶⁾.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⁷⁾, 2006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국 7개 지역에서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처분자 및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수용자 2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⁸⁾.

이와 같이 위험하고, 또 재범성향이 강한 성폭력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이에 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러한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성폭력범죄자들을 개선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또 성폭력범죄를 감소시킬 방법은 없을까에 관심을 둘 필

3) 위 10개의 법안 중 이계경의원 및 박세환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을 제외한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4)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제8조의2제2항 신설),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제11조 제3항 신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조정(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제14조의2), 친고죄의 범위 축소(제15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신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제21조의2),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제21조의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확대(제22조의3)임.

5) 법무부(2006),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6.12

6) 박상진·신준섭(2005), "외국의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미국·영국·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05.6, pp. 313-336.

7) 변혜정·현혜순(2005), 『성폭력피해자치유·가해자교정 프로그램 매뉴얼』, 여성가족부.

8) 2006.6.1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 재범률 낮춘다-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요가 있다.

이에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성향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범방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들로 보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여 실형보다는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와 통제를 통해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그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감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내에서의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내에 방치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실무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동향과 성폭력범죄 신고 및 처리현황을 살펴 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제도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범죄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법 집행기관의 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의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유도과 잠재적 피해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의사소통 및 사회내 처우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 저하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성폭력범죄의 현황

최근 성폭력범죄의 동향, 성폭력범죄의 신고현황 및 성폭력범죄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 본다.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현황

성폭력범죄자 처우에 관한 근거법인 형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등을 중심으로 각 제도의 의의와 집행 현황을 살펴 본다.

3) 현장 집행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 등 집행 현황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전국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집행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

4)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법의 실효성 강화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본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성폭력범죄자 처우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조사, 연구하였고, 보호관찰소나 성폭력상담소의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성폭력범죄 신고 및 처리관련 통계분석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검찰연감」, 법무부의 「보호관찰 통계연보」,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사건처리 현황과 보호관찰 집행현황 등의 통계를 분석하였다.

3) 보호관찰소, 교도소 담당공무원, 관련 민간단체 실무자 등 면접조사

2006.7.25 - 9.19 사이에 전국의 보호관찰소 11곳(서울, 서울남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보호관찰소), 교도소 2곳(영등포, 광주교도소), 상담소 1곳(부산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 24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보호관찰소 수감명령 또는 보호관찰업무 담당자, 교도소 교화교육담당자, 상담소장 등이었다.

면접조사 내용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현황과 내용,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해 문의하였다.

4) 관계전문가회의

2006.9.29에 성폭력범죄자 처우에 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은경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영학 사무관(여성가족부), 윤승은 판사(법원행정처),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우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 연구의 범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 사회내 처우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사회봉사·수감명령을 포함하는 보호관찰은 부과되는 근거법이 다양하

고, 그에 따라 법적 성질과 부과절차, 부과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관에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와 선고유예·집행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가석방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소년원 가퇴원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그리고 보호감호 가출소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 다양하며, 모두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자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성폭력범죄 중 고위험군, 저위험군 등 죄질의 경중이 있는 가운데 그 범죄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러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자,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등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연구도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고위험군의 범죄자 또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그 범죄 및 범죄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집행유예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된 성인, 소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관찰 집행현황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하나로 보다 경미한 범죄단계인 집행유예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수행하여 재범방지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과제 등 시사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수시과제임을 감안할 때, 국내의 제도활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외국제도의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둘째, 개선방안은 그에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들의 필요성과 정도가 표시되어야 실질적인 정책수행방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행기간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과제 역시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II

성폭력범죄의 현황

-
1. 최근 성폭력범죄의 동향 13
 2.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처리현황 21

1. 최근 성폭력범죄의 동향

가. 성폭력 발생실태(2004년 ~ 2006년 전반기)

■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을 통한 실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상담실적 통계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상담 24,911건 중에서 강간이 12,615건(46.3%), 성추행이 10,220건(37.5%), 기타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이 4,406건(16.2%)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상담비율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추행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연령은 20세 이상 성인이 11,978건(48.1%), 14세이상 19세이하 청소년은 6,697건(26.9%), 7세이상 13세이하 어린이 2,922건(11.7%)이며 7세 미만의 유아도 1,021건(4.1%)이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비율 중 7세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7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상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의 경우 전체 사례 24,628건 중 친족, 친인척, 배우자가 6,187건(25.1%), 직장동료 및 상사 3,320건(13.5%), 동급생 및 선후배 2,467건(10.0%), 이웃 2,329건(9.5%), 교사 및 강사 59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례의 대부분이 친족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였고, 모르는 사람은 4,122건(16.7%)에 불과하였다⁹⁾.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상담은 총 1,405건인데 이 중 성폭력 상담은 1,328건으로 전체 상담의 94.5%를 차지한다. 2005년 총 상담은 3,979건인데 이 중 성폭력상담은 2,151건으로 전체 상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도 3,870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이 중 2,598건이 성폭력 상담이었다.

2006년 상반기 상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296건(97.6%), 남성이 31건(2.3%)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840건(63.2%), 청소년 196건(14.8%), 어린이 184건(13.9%), 유아 87건(6.5%), 미상

9) 여성가족부(2006), 「2005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pp.156-159.

21건(1.6%)으로 나타났고, 피해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534건(40.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 481건(36.2%), 성희롱 140건(10.6%), 스토킹 58건(4.4%),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299건(97.7%), 여성 19건(1.5%), 미상 8건(0.6%)으로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1,115건(84.0%), 청소년 126건(9.5%), 어린이 26건(2.0%), 유아 6건(0.4%), 미상 55건(4.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113건(83.8%), 모르는 사람 163건(12.3%), 미상 52건(3.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30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15건(16.2%), 학교·학원내 127건(9.6%), 친밀한 관계(데이트상대 39건, 전 데이트상대 44건, 남편 2건, 전 남편 4건, 동거인 1건) 90건(6.8%), 동네사람, 서비스제공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2006년 상반기의 상담현황은 2004년, 2005년의 상담현황과 유사하다. 즉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남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이나 가족, 학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성추행 등 성폭력이 전체 상담의 50%를 넘는다는 것이다.

나.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

1)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2004년 12월 7일 울산 남부경찰서가 울산에 사는 A양(14)자매 등 5명을 1년여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교 폭력조직원 B(19)군 등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군(18)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¹⁰⁾.

10) 노컷뉴스 2004년 12월 7일자.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 모 중학교 A양(14)을 밀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하고, “부를 때마다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로 찍은 성폭행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A양의 여동생(13)과 A양의 고종사촌(16)까지 불러 금품을 갈취하고 수차례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2004년 11월 경 경남 창원시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했다고 추가 자백하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연행자 41명 중 가담 정도가 심한 2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자 8일 C군(18) 등 3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2명은 보강조사, 6명은 불구속 입건, 20명은 훈방조치했다.

이 사건은 그 범행자체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중하고 피해 사실이 커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은 경찰이 41명 중 단 3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등 범죄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가해자의 학부모들이 피해 학생을 도리어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누리꾼들이 직접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면서 범행이 의심스러운 학생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항의를 하는 등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4년 3월 전북 익산에서도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질주’서클 회원 D군(15) 등 8명이 익산시 한 아파트 E양(12)의 집에서 E양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였다가 1년 만인 2005년 4월 18일 언론에 드러났다¹¹⁾.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8명이 상습적 집단 성폭행을 시인해 6명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특수 강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2명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11)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년 4월 18일자.

학교측 은폐 의혹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 성폭행 사건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연쇄 성폭행범

수도권 일대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속칭 ‘빨간 모자’라는 별명의 성폭행범이 구속되었는데 이 성폭행범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무려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인천지방경찰청에 의하면 당시 구속되었던 피의자 F씨의 여죄를 추궁한 결과 F씨는 2003년 3월 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카페에서 여주인 G씨(31)를 흥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5년 3월까지 67명을 성폭행하고 53명을 강제추행했으며, 16명에 대해서는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3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4,000여만 원을 빼앗은 것이다. F씨의 범행을 보면 특히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 달간 15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강제추행했으며, 5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고, 7건의 강도를 저질렀었다. 이들에 한 번꼴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또 10여 년간 전국을 떠돌며 100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해 온 연쇄 성폭행범 속칭 ‘발바리’가 2006년 1월 19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공개 수배했던 H씨(45)가 검거되었는데 용의자 H씨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 다세대 주택을 무대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¹³⁾.

H씨는 1999년 1월 5일에는 대전 월평동 4층 원룸주택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48만원을 강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장 157cm 가량의 왜소한 체격의 용의자 H씨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거나 가스검침원 등을 사칭,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면 흥기로 위협해 집에 침입했으며, 여성 숫자에 관계없이 성폭행을 일삼고 금품을 강취했다. 문이 잠겨있을 때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침입했으며, 방법

12) 동아일보 2005년 3월 29일자.

13) 국민일보 2006년 1월 19일자.

창을 뜯어내고 침입하기도 했다.

3) 상승적인 성폭행

2006년 2월 26일 전국을 무대로 혼자 사는 여성이나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I씨(31)가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강간치상죄로 5년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10일 만인 2004년 11월 13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한 마을에서 집에 귀가하던 J씨(21)를 폭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충남북(12건), 경기(5건), 경남북(5 건) 등 전국을 무대로 2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다¹⁴⁾.

경찰 수사 결과 I씨는 출소 후 첫 범행을 저지른 뒤 여관,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원룸 등에서 혼자 살거나 야간이나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자 재범 예방대책이나 사후관리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I씨는 인터뷰를 통하여 “심리프로그램이 있었거나 미리 잡혔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망하였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2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K씨는 2006년 8월 10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L양(16)과 대구시 동구 동호동 모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식당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004년 성범죄 혐의로 검거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14) 매일경제 2006년 2월 26일자.

4) 직장 동료나 상사의 성폭행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여성을 송별회 겸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 구로경찰서는 2006년 3월 15일 서울 A중학교 교사 M씨(28)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¹⁵⁾.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두 학기 동안 같은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여교사 N씨가 계약 만료로 지난해 12월말 학교를 그만두자 지난 1월 9일 “송별회 겸 회식이 있다”며 같은 부서 교사 2명과 함께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술에 취한 N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N씨는 “소주와 양주 2병을 회식에 참석한 교사 3명과 나눠 마셨으며, 화장실을 다녀오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며 “잠시 정신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재차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났을 때 M씨가 나를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은 M씨뿐”이라며 “피해자는 다른 교사들에게서도 윤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했고 특별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같은 학교 교사가 동료였던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 N씨가 한 여성상담센터 인터넷사이트에 피해 내용을 올린 글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급속히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A중학교 O교장은 “2월 초 관련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현재 학부모들에게 발송할 가정통신문 내용을 놓고 학부모 대표와 논의 중”이라며 “학생 의견 등을 취합, 이번 사건을 향후 교내 성폭력·성희롱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5) 가정파괴범에 징역 10년 선고

2005년 4월 15일 신혼 가정집에 침입,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

15) 세계일보 2006년 3월 21일자.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성폭행하는 극히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¹⁶⁾.

P씨는 2002년 8월 결혼 1개월 된 Q씨(27) 집에 흥기를 가지고 침입, Q씨를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Q씨 아내를 성폭행하는 등 2002년 8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 성폭력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이상에 제시된 사건들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가를 살펴 봄으로써 피해당사자와 가족들의 피해 그리고 일반인들의 불안감을 상기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에 속하는 집행유예단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성폭력사건들은 다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감염되어 있고 무방비상태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밀양사건이나 익산사건의 경우 학생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지만 죄질이 아주 나빠서 단순히 선처로 끝날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단순히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처럼 가볍게 대하였고 오히려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것만을 의식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밀양 망신을 시켰다’는

16) 연합뉴스 2005년 4월 15일자.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경찰들의 태도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처벌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범죄의식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 또한 자식들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식의 ‘앞 길을 망친 것’처럼 비난한 것도 문제이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은 가해자 남성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아내 혹은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같은 여성이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두둔한다. 대개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꼬리’를 쳐서 가해자가 순진하게 넘어갔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 성폭력범죄가 흉악범죄이고 강력범죄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폭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출소하자마자 또 성폭력을 저지른 범인이 “심리 프로그램이 있었거나 미리 잡혔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인터뷰를 하였는데 단순히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과연 우리의 교정정책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사건 중에는 몇 번씩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¹⁷⁾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재범방지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죄의식없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7) 각주 1)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처리현황

가. 성폭력범죄의 신고현황

다음 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성폭력사건의 증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6,174건에서 1996년 7,158건, 1998년 7,886건이었다가 2000년 10,189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고, 2002년 9,435건으로 줄었다가 2004년 11,105건에 이르고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약 10년만에 79.8%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된 건수이며,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알기 어렵다. 다만,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이 2% 또는 6%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라 실제 일어난 사건수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표 2-1> 성폭력사건의 발생추이

(단위 : 건, %)

구 분	사건수	증감율	비고
1995	6,174	-	
1996	7,158	15.9	
1997	7,120	-0.5	
1998	7,886	10.7	
1999	8,830	11.9	
2000	10,189	15.3	
2001	10,446	2.5	
2002	9,435	-9.6	
2003	10,365	9.8	
2004	11,105	7.1	1995년대비 79.8% 증가

자료 : 법무연수원(2005), 『범죄백서』¹⁸⁾

18) 이용구(2006),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자료, 2006.3.16, p.59에서 재인용함.

나. 성폭력범죄의 처리현황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및 법원의 재판결과

다음 표는 2000년-2004년사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여 준다.

기소율과 기소중지율은 수사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소율은 2000년 52.3%, 2001년 54.0%, 2002년 51.4%, 2003년 51.9%로 점차 낮아지다가 2004년에는 41.3%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4년의 경우 형법범 전체의 기소율 32.0%와 비교하면 성폭력사건쪽의 기소율이 높다. 반면에 불기소율은 2000년 38.1%, 2001년 37.4%, 2002년 40.6%, 2003년 40.0%, 2004년 51.0%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높아지다가 2004년에는 급격히 높아져서 형법범 전체의 불기소율보다 더 높게 되었다¹⁹⁾. 기소율이 낮아지고, 불기소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덜 강경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기소중지율은 범죄자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지표로서, 2000년 4.6%에서 3.7%, 3.8%, 3.1%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2004년의 경우 형법범 전체 기소중지율 12.8%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인소재 파악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엿보게 한다.

이와 아울러 소년보호송치사건은 2000년 이후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소년보호송치율이 3.4%이며, 전체 형법범(1.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 2004년 현재 강간범죄의 불기소사유를 보면, 불기소처분을 받은 4,508명 중 기소유에 235명(5.2%), 혐의없음 974명(21.6%), 죄가안됨 4명(0.1%), 공소권없음 3,295명(73.1%)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소권없음이 73.1%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강간죄가 친고죄인 관계로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대검찰청(2005), 「범죄분석」, p.341.

<표 2-2>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처분결과

(단위 : 명(%))

	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송치	기소중지	기타
2000	10,175 (100.0)	5,323 (52.3)	3,872 (38.1)	322 (3.2)	473 (4.6)	185 (1.8)
2001	10,021 (100.0)	5,413 (54.0)	3,748 (37.4)	355 (3.5)	366 (3.7)	139 (1.4)
2002	8,969 (100.0)	4,607 (51.4)	3,642 (40.6)	281 (3.1)	341 (3.8)	98 (1.1)
2003	9,815 (100.0)	5,090 (51.9)	3,918 (40.0)	341 (3.5)	350 (3.6)	116 (1.2)
2004	8,847 (100.0)	3,650 (41.3)	4,508 (51.0)	304 (3.4)	278 (3.1)	107 (1.2)
2004 (형법범전체)	950,089 (100.0)	304,483 (32.0)	483,592 (50.9)	12,058 (1.3)	121,656 (12.8)	28,300 (3.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05.

2) 성폭력사건의 1심 재판결과

2004년의 경우 1심 재판이 이루어진 피고인 4,148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이 1,711명(41.2%),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1,633명(39.3%), 무죄, 형면제, 소년부송치 등 기타가 804명(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2004년 전체 범죄의 1심재판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형을 받은 비율이 20.6%,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35.4%로 성폭력범죄쪽이 실형은 2배, 집행유예는 약간 높은 편이다. 2002, 2003년의 경우도 대체로 그러하다.

여기서 실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법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지를 추측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집행유예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범죄자체가 다소 경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측에 대한 가해자측의 합의종용이나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강간사건에 대한 관대한 취급 등이 양형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⁰⁾.

20) 성폭력범죄는 근거법상 형법범과 성폭력특별법에 나누어져 있는데, 형법위반자에 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게 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는 이러한 집행유예의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들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2-3> 성폭력사건 및 전체사건의 1심재판 결과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실형	집행유예	기타
2002	4,572 (100.0)	2,024(44.2)	1,728(37.7)	820(17.9)
	209,891 (100.0)	50,587(24.1)	85,659(40.8)	73,645(35.0)
2003	4,208 (100.0)	1,773(42.1)	1,839(43.7)	596(14.1)
	213,351 (100.0)	49,866(23.3)	82,338(38.5)	81,147(38.0)
2004	4,148 (100.0)	1,711(41.2)	1,633(39.3)	804(19.3)
	237,070 (100.0)	48,948(20.6)	83,987(35.4)	104,135(43.9)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3-2005.

3) 성폭력범죄 재범자의 재범률

2004년의 경우 성폭력범죄 재범자 4,817명 중 동종재범은 527명(10.9%), 이종재범은 4,290명(89.1%)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2004년의 형법범 전체의 동종재범 26.6%, 이종재범 73.4%와 비교하면, 성폭력범죄쪽이 동종재범은 낮고, 이종재범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종재범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범죄의 속성을 가진 경우보다는 범죄자적 속성, 즉 절도, 폭력 등 다른 범죄의 기회

한 집행유예율이 성폭력특별법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2003년의 경우 형법범쪽이 50.3%, 특별법범쪽이 37.4%로서 형법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이전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노성호외(1999),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71.

에 성폭력범죄를 함께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 성폭력의 속성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쉽게 재범방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의 범죄자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자 처우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2-4> 성폭력범죄 재범자 재범률

(단위 : 명(%))

	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2000	6,070(100.0)	763(12.6)	5,307(87.4)
2001	6,032(100.0)	850(14.1)	5,182(86.0)
2002	5,508(100.0)	778(14.1)	4,730(85.9)
2003	5,870(100.0)	730(12.4)	5,140(87.6)
2004	4,817(100.0)	527(10.9)	4,290(89.1)
2004(형법범전체)	492,560(100.0)	130,937(26.6)	361,623(73.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05.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중 이종재범비율에 비해 동종재범비율이 낮다는 것은 2004년 현재 주요 10개 범죄 중 강간범죄가 방화, 살인, 체포·감금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는 동종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통계인 『범죄분석』에서는 2004년 기준으로 동종재범율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도소에 복역 중인 기결수의 경우는 검찰단계에 비해 동종재범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2006.8.31 현재 전국 교도소의 성폭력사범 수용현황을 보면, 성폭력사범 4,481명 중 초범이 3,303명(73.7%), 성폭력범죄 2범이상인 1,538명(34.3%)으로 나타나²¹⁾ 검찰단계에 비해 동종재범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과 재범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이유는 범죄자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처우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21) 2006.11.14 법무부가 주최한 ‘성폭력범죄자의 효율적 치료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제출된 법무부 보호과의 자료에서 인용함.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어느 정도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에 관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필요가 있다.

<표 2-5> 주요범죄 피의자 재범률(2004)

(단위 : 명, %)

죄명	전체 피의자 수	재범 피의자		동종 범죄 재범 피의자	
		피의자 수	재범률	피의자 수	재범률
절도	58,762	27,532	46.9	9,623	16.4
강도	4,039	2,395	59.3	501	12.4
살인	974	619	63.6	47	4.8
방화	1,056	755	71.5	40	3.8
강간	8,847	4,817	54.5	527	6.0
상해	37,674	24,966	66.3	7,521	2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306,837	189,061	61.6	66,946	21.8
마약류	6,805	3,590	52.8	1,760	25.9
약취·유인	413	177	42.9	28	6.8
체포·감금	355	154	43.4	17	4.8

자료 : 대검찰청(2005), 「범죄분석」.

4) 전체 형사사건의 제1심 집행유예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현황

다음은 2005년과 2006년 전반부까지 전체 형사사건의 제1심선고 중 집행유예 선고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처분상황을 보여 준다.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입수하지 못해 전체 형사사건의 처분상황을 살펴 볼 것이며,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경우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의 경우 제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이 72,659명이고, 이 중 48.6%에 해당하는 35,299명에게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인 37,360명(51.4%)의 피고인은 집행유예만 선고받고 다른 처분은 부가되지 않았다. 여기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감명령 등의 처분의 과정을 거친 자들의 재범률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하건대, 집행유예만 선고됨으로써 아무 조치없이 범죄자를 방치하고 그 결과 재범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05년의 경우 단순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 가장 많고, 보호관찰, 수감명령의 순이고, 병과처분의 경우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봉사와 수감명령, 보호관찰과 수감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이 함께 병과된 것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 전반기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가 집행유예인원은 줄었고, 상대적으로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비율은 약간 늘었다.

<표 2-6> 전체 사건의 제1심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비율
(단위 : 명(%))

		2005	2006.6.현재
집행유예		72,659(100.0)	28,473(100.0)
보호관찰 등 처분		35,299(48.6)	14,360(50.4)
단순처분	보호관찰	3,872	1,671
	사회봉사	15,514	6,508
	수감명령	2,725	947
병과처분	보호/사회	6,717	2,802
	보호/수감	1,841	556
	사회/수감	3,178	1,221
	보호/사회/수감	1,452	655

자료 : <http://www.scourt.go.kr>

5) 성폭력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접수현황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접수현황을 근거법률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성폭력범죄를 근거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형법, 소년법, 사회보호법, 성폭력특별법이 해당된다. 형법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

치상 등 형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이고, 소년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이다. 사회보호법은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호감호집행에 대한 가출소의 경우로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더 이상 보호감호처분은 없으나 법 폐지이전의 집행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성폭력특별법은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특별법상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집행유예에 대한 부가처분을 보기 위해서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상의 집행유예의 경우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2004년 현재 보호관찰은 2,367명, 사회봉사명령 1,068명, 수강명령 391명으로 보호관찰 처분이 가장 많다. 또한 보호관찰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중 형법에 의해 부과된 경우가 월등히 많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비슷하다. 그리고 형법,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만 놓고 볼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모두 소년에 비해 성인이 받는 경우가 많다.

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이나 단기보호관찰, 그리고 거기에 부가되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통해 재범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범죄의 악순환을 막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7> 성폭력범죄관련 보호관찰 등 접수현황(2004)

(단위 : 명)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성인	소년	계	성인	소년	계	성인	소년
형법	1,234	1,166	68	522	501	21	98	91	7
소년법	656	-	656	230	-	230	215	-	215
사회보호법	41	41	-	-	-	-	-	-	-
성폭력법	436	384	52	316	291	25	78	68	10
계	2,367	1,591	776	1,068	792	276	391	159	232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연보』, pp.124-135, 454-461, 592-601.

6) 성폭력특별법 위반사건의 보호관찰 처분현황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보호관찰이 663건, 사회봉사명령이 421건, 수감명령이 105건으로 보호관찰만 부과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2000년과 2004년을 비교할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건수는 감소하고, 수감명령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수감명령이 처분건수는 적지만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04년 421건 중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것이 162건, 단독명령이 259건, 수감명령의 경우도 2004년 105건 중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것이 46건, 단독명령이 59건으로 나타나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경우보다 단독명령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성폭력특별법위반사건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처분현황(2000-2004)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률
보호 관찰	선고유예	-	-	-	-	-	-
	집행유예	731	763	793	720	663	-7.9
	계	731	763	793	720	663	-7.9
사회봉 사명령	보호관찰부	322	272	187	120	162	35.0
	단독명령	336	271	236	268	259	-3.4
	계	503	364	318	277	421	8.5
수감 명령	보호관찰부	18	12	38	42	46	9.5
	단독명령	21	36	47	47	59	25.5
	계	39	48	85	89	105	18.0
총 계		1,273	1,175	1,196	1,086	1,189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연보』, pp.4-5.

Ⅲ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집행현황

1. 보호관찰	33
2. 사회봉사명령	43
3. 수강명령	50



1.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제도 도입의 의미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제도는 1988.12. 소년법 개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단기보호관찰이 도입되었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는 성폭력범죄자인 성인,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규정하였으며, 1995.12. 형법개정에 의해 전체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 규정의 도입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보호관찰소가 설립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감독, 원조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은 범죄인에 대한 처우를 사회내 처우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정의 중심을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옮겨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법원은 범죄인에 대해 완전한 구금 아니면 무조건의 석방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원호를 받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범죄자 처우를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범죄인의 교정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사회전체가 범죄인의 교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²²⁾.

22) 오영근(1999), “보호관찰제도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 1999.10.8, pp.11-12.

보호관찰의 연혁을 보면, 1988. 12. 「소년법」개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단기보호관찰이 도입되었고, 「보호관찰법」(1995.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명칭개정)이 제정되어 소년법에 국한된 보호관찰이 도입되었다. 그 후 19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성인·소년 구분없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도입되었다.

이어서 1995. 12 형법개정을 통해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이 도입되었고, 2000.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대상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보호관찰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1) 의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수감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제도이다²³⁾.

이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기 위한 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이 법의 목적을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 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이 사회내 처우라는 것과 사회내 처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내에

23) <http://www.probation.go.kr>

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호관찰의 개념에는 ‘지도·감독’과 ‘원호(또는 보호)’라는 두가지 기본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지도·감독’은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과 환경의 관찰,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 및 기타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원호’는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도·감독’과는 달리 비권위적이며 복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원호는 대상자의 자립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또한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와 ‘보호관찰부 가석방’ 및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등이 있다. 범죄자를 시설내에 수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감독 하에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처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Probation과 대륙법계의 Parole로 대별되는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와 ‘보호관찰부 가석방’은 차이점이 있다.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판절차 이분론에 기초한 제도로써, ‘유죄의 인정’ 이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처분이며, 법원에 의해 요구되는 판결전조사를 통하여 재판과정에서 대상자를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에 수용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준수사항과 함께 보호관찰의 부과 여부를 정하게 된다.

반면에 ‘보호관찰부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형의 일부가 집행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즉 수용자를 대상으로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누우침의 정도가 뚜렷한 자를 일찍 사회로 복귀시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원호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²⁴⁾.

3) 기능

보호관찰은 범죄통제, 지역사회 재통합, 재활, 처벌, 억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에 의해 범죄자들의 행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범죄통제기능), 시설내 처우의 단점인 수용자가 석방 후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낮설어 하는 시설내 처우의 단점을 보완하여 범죄자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지역사회에 재통합시켜 주며(지역사회 재통합기능),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이 선고될 때 일반 준수사항 외에 특별 준수사항이 추가됨으로써 범죄자를 재활시키는 기능이 있다(재활기능). 또한 보호관찰의 처벌기능에 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범죄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하는 여러 조건과 준수사항들뿐만 아니라 규칙과 행동규범을 포함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법원에 의한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수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처벌기능).

억제기능과 관련하여, 장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위반으로 언제든지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구금 또는 재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억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²⁵⁾.

다. 보호관찰 집행현황

1) 보호관찰 집행개요

가) 보호관찰 부과절차

형사사건에 계류된 성폭력범죄자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이 부과되면 보호관찰 집행절차가 시작

24) 장규원(1998),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성인범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36-39.

25) 장규원(1998), pp.43-46.

대상자는 보호관찰처분개시일로 부터 10일 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시교육 등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각종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는 개시요건은 아니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보호관찰은 개시된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의무, 선행유지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주거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신고의무 등이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²⁶⁾.

특별준수사항으로는 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게 되며, 유흥가 출입금지, 금주, 약물사용금지 등이 포함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²⁷⁾.

다)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보호관찰 대상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집행유예를 받은 자이며, 성인과 소년이 포함된다. 그 기간은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자는 1년(제59조의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

26) 동 법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7) 특별준수사항으로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유예를 받는 자는 유예기간, 그리고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한다(제62조의2).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별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자는 1년(제16조제1항),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는 유예기간(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한다(제16조제2항).

그 이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는 잔형기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6개월 또는 2년 등 각각의 근거법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보호관찰 종료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유치되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소년범의 경우 법원의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재수용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출소 또는 가종료의 취소가 있거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종료하게 된다.

2) 보호관찰 운영현황

가) 보호관찰 담당부서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부서는 보호국 산하 관찰과이고, 일선 집행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국 14개의 보호관찰소와 23개의 지소가 있다. 보호관찰소 조직은 대개 행정지원팀, 관찰팀, 집행팀,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지원팀은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물품·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업무 감독·교육 및 범죄예방활

동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관찰팀은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 원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집행팀은 사회봉사·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의 일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팀은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조사팀을 두지 않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팀의 사무를 행정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이상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담당한다²⁸⁾.

나) 보호관찰 운영현황

여기서 성폭력범죄자 중 집행유예선고시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는 경우 그 재범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을 통해 얼마나 재범방지를

28) <http://www.probation.go.kr>

할 수 있는가, 즉 보호관찰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제도의 효과성은 보다 경미한 범죄자, 또는 범죄의 악성이 비교적 적은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면서도 성행의 교정을 통해 재범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자신의 전체 보호관찰기간동안에 어느 정도 재범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2004년 현재 보호관찰 종료자 33,353명 중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자는 4,749명으로 14.2%에 해당된다²⁹⁾. 이를 근거법률별로 보면, 사회보호법이 59.7%로 재범률이 가장 높고, 다음이 소년법(15.9%), 형법(11.2%), 성폭력법(8.2%)의 순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2004)

(단위 : 명, %)

구분	2004년		
	종료자	재범자	재범률
총계	33,353	4,749	14.2
형법	14,636	1,638	11.2
소년법	15,892	2,530	15.9
사회보호법	852	509	59.7
성폭력법	232	19	8.2
가정폭력법	1,741	53	3.0
성매매법	-	-	-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313.

29)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 및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2004년부터 재범률 산정기준을 변경, 2003년까지 당해연도 실시인원(단독명령자 포함) 중 당해연도에 재범한 인원만으로 재범률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2004년 도입된 경찰범죄경력조회단말기를 활용하여 종료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체 보호관찰 기간동안의 재범여부를 파악하여 재범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보호관찰이 병과되지 않은 단독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수강명령대상자는 재범률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법무부(2005), 『보호관찰 통계연보』, p.14.

42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4년 현재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자들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을 보면, 소년의 경우 종료자 71명 중 6명이 재범을 하여 8.5%의 재범률을 보여 준다. 그런데 보호관찰만 부과된 경우가 25.0%의 재범률을, 보호관찰과 다른 명령이 병과된 경우가 5.1%의 재범률을 보여 양자간에 재범률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단독으로 보호관찰만 부과되는 경우가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만 단독으로 부과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소년사건 중 성폭력특별법)
(단위 : 명, %)

구분	2004년		
	종료자	재범자	재범률
총계	71	6	8.5
선고유예	-	-	-
단독보호관찰	12	3	25.0
보호관찰부	59	3	5.1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331.

성인의 경우는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률이 8.1%이고, 단독 보호관찰의 경우 7.9%, 명령이 병과된 경우가 8.2%로 나타나 소년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성인사건 중 성폭력특별법)
(단위 : 명, %)

구분	2004년		
	종료자	재범자	재범률
총계	161	13	8.1
선고유예	-	-	-
단독보호관찰	63	5	7.9
보호관찰부	98	8	8.2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340.

한편, 성폭력사범이 재범시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보면, 2004년 현재 재범을 한 성폭력사범 106명 중 절도사범이 33명(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성폭력사범 22명(20.1%), 폭력사범 14명(13.2%), 강력사범 12명(11.3%), 교통사범 11명(10.4%)의 순로 이어진다. 보호관찰이 부과된 성폭력사범이 재범을 하는 경우 절도사범에 이어 성폭력사범이 두번째로 그 비율이 높다. 이것은 <표 2-4>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2004년 기준으로 동종재범이 10.9%인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검찰청의 통계기준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현황상의 재범통계기준이 다른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3-4> 성폭력사범의 재범시 죄명현황(2004)

(단위 : 명)

원 죄명	재범시 죄명 계	재범시의 죄명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 횡령 등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 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사범
성폭력사범	106	14	11	33	2	12	-	5	22	1	6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p.382-383.

2. 사회봉사명령

가.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1) 의의

사회봉사명령이란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어 자유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대신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종사작업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은 처벌과 배상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킴으로써 범죄자와 사회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수

일하게 하려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구금으로 부터 제기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자 고안된 사회내 처우의 한 방안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보호관찰에 따르는 부수적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두 가지의 법적 성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은 기본적으로 사회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처분이다. 그러나 그 처분은 독립적일 수 있고 부가적일 수 있다. 이는 각 국가의 입법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범의 경우 단기보호관찰처분 또는 보호관찰처분시 사회봉사명령을 명할 수 있으므로 부가적 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참조).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도 또한 집행유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 처분이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

둘째, 일반인 또는 범죄자의 보편적 생각으로는 관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³⁰⁾.

3) 기능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은 수강명령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그 수단이 사회봉사명령은 노동이라는 수단을, 수강명령은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을 보면,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고(처벌적 기능), 범죄로 인해 침해받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을 통한 배상을 하게 되며(배상적 기능),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속죄(속죄적 기능)를 하거나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재통합할 기회를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사회복귀적 기능)³¹⁾.

30) 장규원(1998), pp.39-40.

나.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현황

1) 사회봉사명령 집행개요

가) 사회봉사명령 시행절차

사회봉사명령의 시행절차를 보면, 대상자 신고·접수, 개시교육, 판결·결정문 접수,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종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신고·접수단계에서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이어 사회봉사명령 취지 및 자연보호, 복지시설 등 분야별 봉사집행절차안내와 보호관찰준수사항을 고지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보호관찰대상자의 판결·결정문을 접수한 후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하고, 집행하게 된다. 소년과 성인은 분리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자의 주거 및 직업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 배치하며, 집행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게 된다.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이수하면, 소감문 작성과 보호관찰 부과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은 종료하게 된다.

나) 사회봉사대상자 및 시간

형법, 성폭력특별법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500시간 범위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형법 제62조의2, 성폭력특별법 제16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집행유예자의 경우 이외에 소년법 제2호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년법 제3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정폭력사범의 경우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성매매알선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1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31) 장규원(1998), p.46.

성인, 소년대상자의 유형과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는 동 예규의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성인이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박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도착자의 경우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총시간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시간은 집행유예기간, 본형의 기간, 죄의 경중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예규 제6조).

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사회봉사명령의 개시교육은 보호관찰의 경우와 동일하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른 의무, 주거를 이전 또는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의무,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집행담당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집행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소년법, 가정폭력법 보호사건의 경우 실무상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거나 협력집행한다.

협력기관 협력집행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시설이 대상자의 교화 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집행분야나 장소를 정하는 경우 이외는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와의 거리, 가정환경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관이 결정하게 된다.

집행분야는 자연보호(공원하천 등에서의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등), 복지 시설 봉사(양로원·고아원·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사업보조 등), 행정·사법기관 업무지원(읍·면·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 공공시설 봉사(고속도로 국도변 쓰레기 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보수 등), 병원지원(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공익사업보조(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등), 농촌봉사(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등), 문화재 보호봉사(문화재 보수, 제설,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업무지원(수해복구작업, 산불감시 지원 등) 등 다양하다.

사회봉사명령은 명령의 집행완료, 집행유예기간 경과, 준수사항 위반자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 또는 실효, 보호처분 변경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종료된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범죄가 아동성폭력쪽이라면 아동시설은 피해서 집행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성을 볼 때, 사회봉사명령만 단독으로 처분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³²⁾

2) 사회봉사명령 운영현황

사회봉사명령 실제 운영과정에서 성폭력특별법 관련 처분현황은 어떠한가 보기로 하겠다.

2004년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성폭력사건 중 성인사건 375건 중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된 경우가 122건

32) “보호관찰소에서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봉사의 원래 취지가 근로의식 함양이라던지 사회내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봉사명령도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로 본다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할 것 같고. 중할 때는 사회봉사명령까지도 필요할 것 같고. 단독으로 사회봉사명령만 내리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기회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E관찰소 소장)라고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5%), 사회봉사명령 단독인 경우가 253건(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경우는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87.0%)가 사회봉사 단독명령(13.0%)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소년인 경우는 집행유예선고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한데 그 이유가 있는 듯하다.

<표 3-5>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회봉사명령 처분현황(2004)
(단위 : 건(%))

구분	계	집유-보호관찰	집유-단독명령
성인	375(100.0)	122(32.5)	253(67.5)
소년	46(100.0)	40(87.0)	6(13.0)
계	421(100.0)	162(38.5)	259(61.5)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p.398-42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명령시간대별 접수현황을 보면, 성인의 경우 297건 중 101-200시간이 172건(5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1-100시간 96건(32.5%), 201-300시간이 16건(5.4%), 50시간 이하가 11건(3.7%), 301-400시간이 2건(0.7%)인 것으로 나타나 101-200시간에 반 이상이 몰려 있다. 소년의 경우는 25건 중 51-100시간 12건(48.0%), 101-200시간이 12건(48.0%)으로 같고, 201-300시간이 1건(4.0%)이다. 관련법에서는 500시간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200시간 이하에 몰려 있고, 그 이후의 시간대는 적게 부과되고 있으며, 401-500시간은 1건도 없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시간대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표 3-5>와 <표 3-6>의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처분 건수가 421건, 322건으로 100건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표 3-5>의 경우는 전년도 이월사건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³³⁾.

33)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임(2006.12.19).

<표 3-6>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회봉사명령의 명령 시간대별 접수현황(2004)
(단위 : 건)

구분	판결, 결정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 시간 이하	101-200 시간 이하	201-300 시간 이하	301-400 시간 이하	401-500 시간
성폭력법	322	11	108	184	17	2	-
성인	297	11	96	172	16	2	-
소년	25	-	12	12	1	-	-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p.428-435.

한편, 성폭력범죄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종료하고 난 후 재범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통계상 성폭력범죄자에 관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전체 범죄의 사회봉사명령 종료자들의 재범률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2004년 현재 사회봉사명령 종료자 37,612명 중 재범자는 1,670명으로 재범률은 4.4%에 이른다. 그런데 연령별 재범률이 성인의 경우 13.1%, 소년의 경우 2.9%로 나타나 성인과 소년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7>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재범현황(2004)

(단위 : 명, %)

구분	2004년		
	종료자	재범자	재범률
총계	37,612	1,670	4.4
성인	32,077	945	13.1
소년	5,535	725	2.9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538.

3. 수강명령

가. 수강명령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1) 의의

수강명령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강명령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행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봉사명령과 비교할 때, 그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인 노동을 부과하는 반면, 수강명령은 교육·훈련 등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법적 성질 및 기능

수강명령은 독자적인 명령 또는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부과된다.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부과되는 경우는 보호관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자유(즉 시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강명령은 사회봉사와 유사하게 처벌적 기능, 배상적 기능, 속죄적 기능, 사회복귀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³⁴⁾.

나. 수강명령의 집행현황

1) 수강명령 집행개요

가) 수강명령 시행절차

수강명령 시행절차는 우선 판결의 확정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34) 장규원(1998), p.46.

보호관찰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수강명령 취지 안내, 프로그램별 교육진행 방법 고지, 보호관찰준수사항 고지 등 개시교육이 이루어 지고, 판결문 접수 후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받게 된다. 수강명령은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수강명령 집행은 집행명령서 발부를 통해 사범별 직접집행 또는 협력집행 결정이 이루어진다. 소년과 성인은 분리하여 집행한다.

나) 수강대상자 및 시간

형법, 성폭력특별법상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200시간 범위내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된다(형법 제62조의2, 성폭력특별법 제16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 유형의 하나로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을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제5조).

또한 수강시간은 죄명, 피고인의 성향, 관할 보호관찰소의 수강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예규 제6조).

다) 수강명령의 내용

수강명령의 개시교육, 준수사항, 집행담당자, 종료는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수강명령은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강의, 심리치료 등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가정폭

력 방지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시청각교육, 강의, 견학, 참여식 토론, 정신 심리치료 등이 이용된다.

기타교육으로는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훈련 등 인성교육, 극기훈련, 체육 활동 등 심신단련 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직업교육,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된다.

수강명령은 1989년 보호관찰 도입과 함께 소년범에 한하여 실시된 이후 1997년 보호관찰이 성인범에 확대·실시되면서 내용적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다. 소년범에 한하여 실시되던 당시의 수강명령대상자는 본드 등을 흡입한 약물대상자가 주류였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도 어려웠으나 1997년 보호관찰이 성인범에 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수강명령도 이전의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수단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매년 접수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2) 수강명령 운영현황

가) 운영실적 및 효과성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수강명령사건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1989년 298명에서 2005년 현재 13,515명으로 크게 확대되어 수강명령의 활용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8> 연도별 수강명령 접수 현황

(단위 : 년, 명)

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73,896	298	1,347	1,522	1,588	1,479	2,270	2,004	1,33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43	3,650	4,303	8,132	9,024	10,339	10,748	13,813	13,515

자료 : <http://www.moj.go.kr>

2005년 전체 수감명령 대상자 중 죄명별 분류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사범으로 전체의 70.7%(9,558명)이고, 두번째는 폭력사범이 11.5%(1,5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사범은 420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수감명령대상자 죄명별 접수 현황(2005)

(단위 : 명)

계	교통사범	폭력사범	절도사범	사기·횡령사범	강력사범
13,515	9,558	1,550	883	110	96
	마약·협박	풍속사범	성폭력사범	경제사범	기타사범
	502	174	420	7	215

자료 : <http://www.moj.go.kr>

* 전년도 이월인원 제외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감명령 처분현황을 보기로 하겠다.

2004년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수감명령 처분건수는 105건으로 성인 92건 중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가 36건(39.1%), 수감명령 단독인 경우 56건(60.9%)로 수감명령 단독인 경우가 더 높다. 소년의 경우 13건 중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가 10건(77.0%), 수감명령 단독인 경우가 3건(23.0%)으로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가 높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별법에서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의무화한 데서 기인한 듯하다.

<표 3-10> 성폭력특별법 관련 수감명령 처분현황(2004)

(단위 : 건(%))

구분	계	집유-보호관찰	집유-단독명령
성인	92(100.0)	36(39.1)	56(60.9)
소년	13(100.0)	10(77.0)	3(23.0)
계	105(100.0)	46(43.8)	59(56.2)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p.542-56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감명령의 명령시간대별 접수현황을 보면, 2004년 현

재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수강명령 82건 중 성인사건 72건 모두 50시간 이하이고, 소년은 10건 중 50시간 이하가 9건, 51-100시간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명령 대상건수자체가 적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여건이 안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명령시간대와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성폭력특별법 관련 수강명령 명령 시간대별 접수현황(2004)
(단위 : 건)

구분	판결, 결정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이하	101-200시간
총계	82	81	1	-
성인	72	72	-	-
소년	10	9	1	-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p.566-575.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재범현황을 보면, 전체 수강명령 종료자 12,516명 중 전체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자는 369명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수강명령대상자의 재범률은 2.9%에 이른다. 이것은 사회봉사명령의 재범률 4.4%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제도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수강명령 접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3-12> 수강명령 대상자 재범현황(2004)
(단위 : 명, %)

구분	2004년		
	종료자	재범자	재범률
총계	12,516	369	2.9
성인	10,925	126	7.9
소년	1,591	243	2.2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676.

다음은 수감명령 협력기관 현황을 보여 준다. 2004년 현재 237개소의 협력기관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성폭력관련 협력기관은 2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이 약물 55개소(23.2%), 다음은 가정폭력, 준법운전, 심리치료, 성폭력의 순이다.

<표 3-13> 수감명령 협력기관 현황(2004.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협력기관 성격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총계	237	55	38	31	46	26	41

자료 : 법무부(2005), 『보호관찰통계』, p.671.

나) 수감명령프로그램 내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감명령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성폭력치료강의가 있으며, 횟수는 14회 정도로 이루어 진다.

성폭력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치료강의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성의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면서 충동조절, 인간관계 강화훈련, 남녀평등의식과 자기통제력을 함양, 나아가 비판적인 성문화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성의 인식을 교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성교육 부분과 피해자 공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방법은 집단 심성수련과 성교육 등의 강의를 이용되며,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수감명령 프로그램은 주로 14회 정도로 구성된 성폭력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이며,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다. 또 하나 K보호관찰소의 ‘행복한 삶 프로그램’은 성폭력범죄자 뿐 아니라

수강명령 대상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이며,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체 전문강사로 활용되고 있다.³⁵⁾

2006년 현재 진행 중인 D보호관찰소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성인, 소년용으로 나누어져 개발, 시행되고 있다.

<표 3-14>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소년)

<프로그램명 : 청소년 성폭력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명	내 용
등록 및 준수사항	- 준수사항과 불이행시 절차 설명
사전평가	- 정신의학적 진단, MMPI,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충동적 척도, 우울/불안척도, 분노척도 등
Introduction/ 인생그래프	- 프로그램 소개, 참가 서약서 작성 - 서로에 대한 소개, 삶에서 어려웠던 일과 폭력(비행)과의 상관관계 탐색
나의꿈/자아상 확인	- long-term goal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기 - 내 꿈의 방해자와 조력자
사랑과 폭력	- 폭력의 정의에 대한 설명,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에 대해 비교, 설명
인지행동적 접근 소개	- 인지 모델 소개 - 충동적 감정 대처와 적절한 문제 해결 위한 전략교육
가학적 행동에 대한 인식 확인	-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던 상황에 대한 회상, 피해자 역할 체험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 등	- 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발화 - cognitive bias들을 수정
성폭력피해자/ 낙태비디오	-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시청 이전과 이후의 인식에 대해 구분하여 발표 - 성폭력의 결과에 대한 인식통해 행동 통제력 강화
나는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은?	- 성폭력의 모델 소개 및 적용 - 도식에 따른 자기 사례 적용
성적 각성 인식 및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처, 자기파괴적 대처 구분 - 부적절한 성적 대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 escaping strategy 세우기
긴장 이완 분노통제 자기주장 훈련	-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16단계 긴장 이완법 교육) - 적절한 문제해결 훈련을 위해 분노감 줄여줄 수 있는 생각 바꾸기 시도 - “자기 주장적” 반응으로 반응 패턴을 유도

(계 속)

35) 보호관찰 담당공무원 면접과정에서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행복한 삶 프로그램’의 진행과 그 효과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현황 57

세부 프로그램명	내 용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	- 대화법 교육, 대인관계 맺기 실습 - role paper작성,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발표
Hot Seat 1~3	- 범행과정 분석 및 재범 예방 단서 발견 연습하기 - 자신의 성적 가해 행동에 대해 설명, 전후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발표 - denial을 포함한 정당화, 왜곡된 사고, 부적절한 감정 등에 대해 challenge
Hot Seat 4 (마무리 정리)	- 자신의 성적 가해 행동에 대해 설명, 전후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발표 - 프로그램 참여 의미 나누기
사후평가	- 충동성 척도, 우울, 분노, 불안, 공격성 척도 등
종 결	- 소감문 작성

<표 3-15>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성인)

<프로그램명 : 성폭력 재범방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명	내 용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참여 목적 및 주의사항
자기소개 및 관계형성	- 집단규칙 동의서 작성 - 참여자와 진행자간의 관계형성하기(참여동기 및 심리갈등 소개)
MMPI 검사	- MMPI 검사 실시
심성수련	- 별칭짓기, 가족화, 자기공개
비디오 시청	- 성폭력 관련 비디오 시청후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에서 차이점 토론
편지 쓰기	-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어린시절 성경험과 성에 대한 태도 탐색	- 어린시절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 연관성 알아보기
성교육	- 우리나라의 성문화, 성의식, 남녀의 차이, 잘못알고 있는 성, 양성 평등 가치관에 대해 토론
성의 왜곡인지 수정	
성폭력 책임인식	- 행위사실 인정, 책임인정
강간 통념 척도 검사	- 척도검사 후 의견 나누기
재발방지 계획	-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장벽 세우기(외벽, 내벽 쌓기)
역할극	
자존감 회복	- 피해자, 가해자가 되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새로운 인생	- 자신을 용서하기, 자신에게 격려하기
마무리	- 사후설문 작성

IV

현장 집행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1. 면접조사 개요	61
2.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62
3. 보호관찰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76



1. 면접조사 개요

2006.7.25 - 9.19 사이에 전국의 보호관찰소 11곳(서울, 서울남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보호관찰소), 교도소 2곳(영등포, 광주교도소), 상담소 1곳(부산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 24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보호관찰소 수감명령 또는 보호관찰업무 집행담당자, 교도소 교화교육담당자, 상담소장 등이었고, 현지 관찰소 조직상 관찰팀, 집행팀 소속 공무원을 면담하였다. 따라서 1개소당 1-3명의 공무원을 만났다. 또한 교도소 집행담당자를 면담한 것은 실행대상자들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다.

면접조사 내용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현황과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해 문의하였다.

실제 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집행담당자들을 면접한 결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집행을 문의하였으나 특히 수감명령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관련 법이 수감명령을 성폭력 치료에 적합한 유형으로 규정하였고, 수감명령의 접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감명령 집행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많이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본 면접조사가 계량화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에 제시된 결과들을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집행에 관련된 실무자들을 통해 집행현황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청취한다는 것은 집행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유사한 의견이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원형 그대로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가. 현황

1) 연간 집행현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연간 집행현황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이 병과되거나 단독인 경우가 모두 합쳐 각 소별로 50건 안쪽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소년법, 사회보호법(폐지 이전) 등을 모두 망라한 숫자이므로 전체 보호관찰 집행에 있어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적인 열세는 특히 수감명령의 경우 어느 정도 집단이 구성되어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기준으로 저희 관찰소가 33건이었더라구요. 이게 성폭력범죄 관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이. 그런데 올해(2006) 제가 보니까 수감은 현재까지 5건을 했어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수감은 10건 정도 되지 않겠나. 2006년 시작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H관찰소 보호관찰관)

“연간 성폭력 관련해가지고는 성폭력범죄자를 형법, 특별법 다 같이 따가지고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은 37명인데 수감을 받으러 온 사람은 7명이에요. 보호관찰로만 온 사람들이 25명. 그 전에 보면 형법, 소년법, 사회보호법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K관찰소 보호관찰관)

“대상자가 안 많으니까 뭐, 지난해에도 4명이었나? (예. 4명이에요.) 성폭력 대상자들은 거의 현재 뭐 없다고... 현재 인원이.. 지금도 저희등.. 현재 있는 사람도 성인 3명, 소년 4명... 지금 그게 그 앞의 3명까지 다 향해서

1년 동안에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다 항해서 용해 전부 다가 10명입니다.”
(J관찰소 수강집행팀장)

“성폭력대상자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용해할 해도... 대상자가 그
열 몇 명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로 다섯 명 정
도. 성폭력 수강은 용해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집행이...”
(F관찰소 사무관)

“소년들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강간미수라든지 이런 것도
소년법에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에 작년엔 한 12건 같은 경우가
사건 접수 되었었구요. 형법에, 이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것 제외
하고 일반 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강간이라든지 강간미수라든지 항해서
형법이 32건 정도되고,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것 한 11건정도 되고.
작년 1년 동안...”
(C관찰소 계장)

2) 수강명령 집행관련

가) 성폭력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상 시차문제 발생

각 소별로 보호관찰대상의 성폭력범죄자가 많지 않아 특히 일정한 수의 집
단이 필요한 수강명령의 경우는 1-2명의 대상자로는 집행이 어려워 일정한
수가 모여지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판
결문 수령 후 1달이 넘어 시작된다는 사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의 효과를 반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처벌이 끝나고 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많이 혼란이 있다. 처벌 끝나고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을 맡으면, 그 때 부터 교육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실은 그렇게 되거든
요....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수강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
이 인원을 채우느라고요. 현재도 32명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
요?)... 근데 보호관찰같은 경우는 신고기간이 영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항소안할 거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봉사집행같은 경우는 판결문 수령이 되면, 통상 봉사같은 경우는

한달 쯤 있다가 집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강같은 경우는 한 달 쯤 있다가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이죠.” (B관찰소 계장)

“어떤 경우는 한참 지낸 다음에 집행이 되어서 시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성인들같은 경우는 없는데 성폭력특별법처분 받는 경우는 별로 그런게 없는데, 소년법 처분같은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시작해 가지고 일달 뒤 일년 후에 재판을 받는다던지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어때요?) 그런 경우는 처벌훈과가 미약하죠. 훈과가 적죠. 처벌이냐는게 즉시적으로 바로 처벌이 되어야지 처벌의 훈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데 한참 뒤에 하는 것은 약할 수 밖에 없죠.” (C관찰소 사무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소에서는 공조집행이라고 하여 수 개의 기관에서 대상자들을 모아 집행하게 되며, 이 때 외부의 성폭력상담소, 대학 심리상담연구소, 여성단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위탁기관으로 협력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집행하기도 하고, 위 협력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또는 수강명령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시간은 보호관찰소에서, 나머지 30시간은 외부 기관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조집행을 통해 수강명령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다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이것이 보다 수월할 듯하나 지방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공조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수강명령 공조집행시 지역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급 등 대책이 요구된다.

“청소년같은 경우는요. 서울지역에 보호관찰소가 5개가 있고, 이런 수강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보호관찰소 끼리 서로 연계를 하게 되어요. 이번에는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수강을 한다고 하면 동부소 교육받을 인원 2명, 남부소 2명, 서부소 2명, 서울 본소 4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모아요. 모아서 동부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보내요. 또 반대로 다른 소에서 하게 되면 다른 소에서 하는 대상자들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되구요.” (B관찰소 계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원거리에 있거든요. 사실상, 다 일일이 서울에서 모아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다짜 저희들이 공조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분야별로 인원수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서는 지소가 네 개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에 몰려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주나. 서울시내는 가능하겠죠? 전철로도 오니까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죠. 저희들이 장기간 두기도 어렵죠. 우선은 수강명령 자체가 재변방지인데 교육도 안하고 한 명 있다고 해서 그냥 두었을 때는 재변했을 때는 징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깐요.”

(E관찰소 수강집행팀장)

“그때도 숫자가 안될 때는 다른 소 상방기에 저희들이 3개 보호관찰소를 모아서 한 15명 정도 인원을 구성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A관찰소 계장)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는 7월 달에 동부 보호관찰소하고 공동으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몇사람만 압혀 놓고 하기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서울 동부하고 같이 해서 8명이나 9명 정도 집단을 구성해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C관찰소 사무관)

“성폭력대상자의 경우에 프로그램을 할 때 거의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맡게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수강자 집단모임, 집단치료를 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OO안에서 같이 성폭행치료를 프로그램하는 분끼리 집단을 하시는 것이고 보통 개별적으로 담당자치료를 받다가 집단프로그램이 있으면 와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두 명, 한 명 이럴 때가 있고요. 지금은 한명 제가 그냥 하고 있고요.”

(I관찰소 계장)

“한 명 있을 때는 개별면담은 좀 어렵잖아요. 집단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혼자서 측면에서... 좀 기다리지요. 기다리거나... 장기적으로 기다리기는 어려우니까... 타 기관에 할 때 공조집행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다거나... 공조집행하고 있죠. (인천사냥이 서울로도 가고 그대요?) 서울까지는 안가고 근처의 안산이나 부천... 프로그램 할 때 같이 공조해요.”

(D관찰소 책임관)

나) 성폭력범죄 유형별 교육 여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연령을 기준으로 아동대상인가, 성인대상인가 등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범죄자의 특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을 행하는 경우 그것이 동종재범인가, 이종재범인가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의 목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분류에 따른 집단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보호관찰소 대부분이 수강명령 대상자를 성인과 소년정도로만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교육대상자들이 많지 않고, 간헐적으로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집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보호관찰소 담당자들도 유형별 구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아동성폭력과 성인성폭력의 구분교육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관찰소의 프로그램내용은 다른 관찰소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준법운전 등 범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 또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성폭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강명령 시간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자 대상별 프로그램, 성폭력 범죄 유형별 교육은 이거는 없는 것이 그게 유형별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대상자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대상자 수가 원래 적다보니까 유형별 교육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법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대상자 수가 적다는 거예요.”

(H관찰소 보호관찰관)

“(가해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못 느끼셨나요?)
네 전. 혼란적이려면 세부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혼란적이겠쥬.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못하고...” (C관찰소 사무관)

“성인하고 소년하고 섞어서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
이나 하면 애들이 저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저런지 몰랐다는 거쥬.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면, 아니 아버지, 아이는 이
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 아,
저 중에서 나쁜대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프로그
램은 계속적으로 성폭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고 이제 그 기
반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또 행동적인 부분에 특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겠쥬. 그건 개인면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
분이지 않습니까?” (K관찰소 보호관찰관)

“그렇게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전체 성폭력 사
범 가해자 프로그램하기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숫자가 적어 가지고... 뭐
한명, 두 명되고...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소년하고 성인하고 나눠서 하
는 정도...” (D관찰소 책임관)

“(그러면 대상자들이 유아 성폭행도 있고 성인끼리의 강간, 강제추행도
있고 할 텐데 같이 하세요?) 그걸 수밖에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요. (다른 경험으로 봤을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누는게 좋겠
다는 생각하시나요?) 나누는게 좋쥬. 대상자를 확보된다면 나누는게 좋습니
다.” (F관찰소 사무관)

다) 집행담당자들의 전문성, 업무배치 관련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나 업무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선 집행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가도 활발한 듯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박사나 임상심리
사 등 특별채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업무배치도 보호관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당자에 대한 수감교육이 가끔씩 내려옵니다.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심리학 박사 또는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특채도 저희가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 측면이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훈리가 있다고 해도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자꾸 영입을 하고 저희들도 자체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I관찰소 수감집행팀장)

“보호관찰이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오랫동안 익숙하고 대화도 형성하고 마음도 열고 그래야 하잖아요. 일하는데 있어서 2년간 하는데 많이 바뀐다, 담당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죠. 보호관찰 대상자가 낯설어 하거든요. (낯설어 하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네. 그러나 저희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대상자들에 관한 정보 다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H관찰소 책임관)

“전문성과 관련하여, 저희가 이제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죠. (거기 실제로 참여할 시간을 할애해 주시나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업무배치는 어쨌든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다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업무배치를 할 때 수감이나 봉사부분에 대해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하죠. (경험자들이요?) 그렇죠. 주로 계장 이상들이 수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F관찰소 사무관)

라) 사후관리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단독으로 사회봉사나 수감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이 종료된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재범방지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단독명령시 사후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어렵고,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되어

단독명령이 종료되더라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당해 범죄자를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보호관찰없이 수강명령만 부과되는 경우 그 집행으로 피수강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개입은 종료되고 그 이후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개입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실무상 보호관찰관들의 경험에서 볼 때, 단독명령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명령의 종료만으로는 재범방지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안으로 보호관찰의 병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리체계는 수강명령 종료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K관찰소의 예처럼 사후에 교육수료당시 소감문을 보내 준다든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방법은 좋은 참고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우리 보호관찰에 격항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데, 단독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하겠다. 아니면 수강명령을 집행조건으로 하던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가 끝나보면 저희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후에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거든요. 여러가지 건트를 해가지고 보호관찰 계속 되는게 아무래도 낫죠. 집행기간동안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 있으니까...”
(C관찰소 계장)

“보호관찰 텀이 긴 기간이 필요하다면, 보호관찰하고 수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면서 보호관찰의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봉사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같이 병과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강하고 사회봉사하고 같이 병과를 해서 오늘은 하루정도 고아원, 양호원에 가서 사회봉사하고 다음 날은 수강을 받도록... 프로그래밍 안에 같이 있게 되어서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도록...”
(H관찰소 보호관찰관)

“단독 수감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명령집행이 끝나면 집행유예만 낫는다. 집행유예기간내에 보호관찰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독명령보다 흔 라적이다.” (G관찰소 사무관)

“그냥 프로그래밍 하고 보내는게 아니고 수유식 할 때 소감문을 맞들어가 지고 한 달 뒤에 복사 해가지고 다시 보내 줍니다. 인터넷 좋아하는 친구 들은 인터넷카페에 들어가서 글도 남기고... 이 사람들이 소감문을 써 놓 고 가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 봤다가 한 달 뒤 정도에 보냅니다. 하루 할 때 소감문 발송을 자발적으로 세 사람 정도 하는데 딱 눈뭉을 흑히고 그려 거든요. 근데 그때 감동이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한 달 뒤에 다시 받아 보면 그 분위기를 다시 느끼는거죠.” (K관찰소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기간동안에는 관찰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행 유예기간이 2년 정도 보호관찰처분을 법원에서 보통 내리거든요. 그 기간 에는 관찰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J관찰소 수감집행팀장)

“소년은 보호관찰이 당연히 붙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면담하고 그러는데... 단독명령인 경우, 보호관찰없이 수 감명령만 있다던가 사회봉사만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육명령만 받았 기 때문에 나오라고 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보호관찰이 병려되는게 필요하죠.” (D관찰소 수감집행책임관)

“수강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보호관찰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 니구요. (그러다 보면 보호관찰이 같이 있는 게 낫죠?) 그거는 말할 필요 도 없죠. 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을 안 붙힌다는 건 판사님들이 아마 좀 그런 걸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뢰회복을 하던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A관찰소 수감집행팀장)

“보호관찰이 병려된 경우는 교육이 끝나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어요.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집행유예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보호관찰기간이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교육이 끝나고 보호관찰을 인해서 이제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구요” (B관찰소 계장)

“저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성폭력범죄자같은 경우는 보호관찰하고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같이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3가지 다요?) 3가지다가 아니라 2가지 이상. 보호관찰이 필수적으로 붙고 사회봉사나 수강이 부가적으로 부가가 되서 수강같은 경우 교육을 하지않고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강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보호관찰 중에 수시로 개별교육이나든지 여러가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쥘 되어 있어야 재범으로 가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H관찰소 보호관찰관)

3) 보호관찰협의회 운영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에 대해 그 이행상황 등에 관한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연계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관찰협의회이다. 법원입장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처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관찰소입장에서는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므로 양자간의 긴밀한 의사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업무이해와 신뢰감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연계체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원활한 업무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판결전조사부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이 제도가 소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없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I관찰소의 예처럼, 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증 환자를 선별하여 그에 맞는 치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도 판결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이 판사님들이 바뀔 때 마다 보호관찰협의회의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구요. 부정기적으로도 저희들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이렇게 하고 있다, 법원에 갈 때 마다 가서 회의를 통해서 자유를 배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해 법원 입장에서는 판사가 내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처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고, 저희들도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애로 점이나 건의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A관찰소 계장)

“저희가 얼마 전에 집행했던 사람 중에 입모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20대 중반쯤 됩니다. 그 사람은 식재로 보면 한자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그 사람은 준법운전 수강만 의무만 해서는 안되죠?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 그러다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수강이 부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봉사가 부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법률적으로 봐서는 소년에 대해서 하고 있는 판결전조사, 저희가 심리검사나 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보호관찰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전 조사 제도가 있는데... 성인도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할 때 판결전 조사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이런 오류가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관찰소 계장)

“(판결전 조사제도 잘 안하죠?) 그렇죠. 대부분 소년위주였었구요. 성인은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생겨가지고 ... (A관찰소 계장)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을 해주어야. 대략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판결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대상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확실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 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거죠.” (E관찰소 소장)

나. 효과성

1)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태도

여기서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처분에 임하는 태도

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선 보호관찰집행담당자들은 성폭력범죄자들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 비해 수강명령 등에 임하는 태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체에 대한 수치심 등으로 교육과정상 비협조적이거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성향이 고쳐져 향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폭력사범같은 경우는 다른 사범과는 달리 그게 덜해요. 아무런 여자 평계를 대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수치심이 있어서 빨리 이행을 해버려야겠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범이나 폭력사범의 경우는 빨리 이행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경우가 성폭력은 그래도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B관찰소 계장)

“달순히 수강명령 집행할 때도 태도문제도 나옵습니다. 태도 문제만 보면 다른 여러 종류보다는 성폭력이 태도는 양호하다고 보고요. 비슷한 교육에 성구매자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성폭력은 태도자체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죄명자체가 본인들이 느끼기에 창피하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세도 똑바르고 옆에 사람들과도 대하도 하지 않고...”
(E관찰소 수강집행팀장)

“대체로 성폭력사범이 순응하는 정도가 아주 높으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거고 근데 나가서 또 그런 일(재범)을 하니까...”
(A관찰소 계장)

또한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성인범의 경우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자신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않고 또 억울해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이 바뀌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수강명령의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소년법의 경우 그 부모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사건이 아는 사람들간에 발생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이 함께 놀다가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법원의 선고도 집행유예 등으로 약하게 선고되는 점 등이 자주 발생한다. 사회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왜곡된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보호관찰대상인 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와서 조금 억울하다, 법치사실 적어 놓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전혀 잘못이 없으면 여기 욕 이유가 없었다. 저희들한테 대가를 치우려 온 것이다 라는 부분도 처음에는 인정을 못해도 교육을 받고 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D관찰소 책임관)

“성폭력이라던가 성추행을 그 사람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좋아서 그런거지 성추행한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말... 본인생각하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다르거든요. 보는 경우도 여자를 본다 그 시선에 따라서 이상하게 보는 것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성추행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사건을 인정합니다.”

(I관찰소 수강팀장)

“소년의 경우가 제가 집행당당자로서 느끼는 건데, 소년의 경우는 보통 보호자들과 같이 신고를 오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일당은 제 지식 잘못이죠.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여자애를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애가 행실이 그 모양이거나, 여자애 보호자가 혐의급 뜯어내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보호자가 말할 때, 그 말이 애한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우리 사회에 성 의식이라고 하는 척도나 잣대가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자체에 대해서 너무 허용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B관찰소 계장)

“피해자가 항의할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들도 성폭력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거든요. 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안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항의할 하고 어른들도 유도할 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C관찰소 사무관)

한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다른 절도죄 등의 경우와 다르게 더 높기 때문에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 경청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와 부모의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성폭력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거든요. 보호자들이 정신이 바짝 든다고 할까 모든 가족들이 집중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집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성폭력범죄자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호자 관심도나 이런 것이 성폭력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관찰소 소장)

2) 교육효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의 효과는 사후에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체계로는 보호관찰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는 따로 없어 객관적인 검증은 어렵다. 다만, 보호관찰집행담당자들의 경험에서 보면, 보호관찰 등이 부과된 사람의 재범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소년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수강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수용하게 되는 등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소년의 경우 성폭력교육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시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보호관찰없는 단독명령은 지양하도록 한다. 특히 성인보

다 소년의 경우 교육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에 집중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실제 집행유예자들의 재범률하고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재범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예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호관찰이 같이 부과된 사람의 재범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셔요?)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H관찰소 보호관찰관)

“보호관찰만 있는 거 보다는 수강교육을 한번 이상 거친다는 게....소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수강을 한번 받았던 친구들하고 그냥 단순 6개월, 1년 보호관찰 받은 친구랑 대번에 차이가 나는 걸 보거든요.”
(J관찰소 수강집행팀장)

“밖에 나가서 또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니까. 교육때문에 안하는 건지 처벌이 무서워서 안하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같은 경우 아이들은 행동이 달라진다면...생각을 못했던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 인터넷이나 이런걸 보면서 해도 되지 이런切的의식이 없었던 행동에서 아, 내가 잘 못했구나 행동에 대한 책임수용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는 단계정도로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B관찰소 계장)

3. 보호관찰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여기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여기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외부강사의 질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외부강사의 지원영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을 동일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수강명령 집행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교육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프로그램 검증절차 필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현재는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성폭력 대상자가 적으니까 프로그램이 있어도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과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인지 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기관에서 가해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H관찰소 보호관찰관)

○ 외부강사의 질적 전문성 향상 필요

“성폭력파트도 그래서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는 가정폭력분야가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교수나 연구원수준의, 그런 전공도 하고 연구경력도 많고 어느 정도 양성되어 있는... 현재는 오시는 분들이 전문성보다는 (약간 운동차원으로) 구호성에 그치는 정도인 것 같아요.”

(H관찰소 보호관찰관)

○ 외부강사의 지원영역 관련

“가정폭력같은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달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사성이 있어서 같이 해도 되는지를 검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든 약약에 차별성이 필요하다면 아예 가

해자 상담소를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몰라요. 현재는 가정폭력상담소가 피해자 위주로 되어 있다면 가해자 상담소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 본다던지 (근데 시석자체를 새로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이 필요하겠죠.” (H관찰소 보호관찰관)

○ 집행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교육 및 예산지원 필요

“자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무 리테이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강명령하기에는 부적절하데 어쩔 수 없이 업무시키는, 인사 이동상 맡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아무래도 교육가능성도 좋고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관찰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라든지 교육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죠. 또 교육희망은 많이 하는데 한정된 예산내에서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요.” (C관찰소 사무관)

○ 다양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시간도 짧고 프로그램의 운영방법도 성폭력 사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연속 시스템이에요. 40시간이면 5일이면 끝나거든요. 그것도 교통사범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라면 그게 효과성이 있는가. 시간이 100시간정도 된다면 이걸 일년 과정으로 보던지 이렇게 해서 초기에 뭐한 20시간이나 30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월 몇 시간씩 교육을 하던지 필요할 때 교육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H관찰소 보호관찰관)

○ 재범가능성 측정도구 개발필요

“보호관찰, 수강명령 종료 후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대한 척도에서 몇 점 이상 맞는다던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실제 행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혹 현장에서 확인도 해보고 나중에는 6개월 이상 되면 재범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 이렇게 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겠죠.” (H관찰소 보호관찰관)

나. 성폭력범죄 유형별 분리교육 필요

성폭력범죄는 유형에 따라 교육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가, 성인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시 강조해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그 범죄자가 소아기호증 등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만 분리하여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나이별로 세분화해서 프로그램별로 맞들어서 집행하고 그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성인은 피해자 나이별 또는 피해자 직업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 같아요.” (A관찰소 수감집행팀장)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성인에 대한 강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리 쳐우하는 게 당연하구요. 그 범죄의 특성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이다라고 치면 어떤 폭력성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구요. 미성년자 성추행이면 어떤 폭력성보다는 성의식 자체를 치유를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B관찰소 계장)

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연계

수감명령에 보호관찰을 병과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제도의 효과를 잘 모르거나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집행을 신뢰하지 못해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법원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구조가 요구된다.

“수감명령에 보호관찰을 안 붙인다는 건 판사님들이 아마 좀 그런 걸 잘 몰라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뢰회복을 하던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A관찰소 계장)

“법원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도 판사님 등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판결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업무를 하는데 인원을 주십사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

(E관찰소 소장)

“대법원 예규에 어떠 어떠한 사람이 사회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딱연하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성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겠죠. 제일 큰 부분은 법무부하고 대법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법제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 하고 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죠.”

(H관찰소 보호관찰관)

“제가 옥상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옥상에서는 보호관찰협의회를 하게 되면 법원장님이나 책임 법관등한테 말씀 드립시다.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결전조사를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I관찰소 수감집행팀장)

라. 성폭력전담제 도입 필요

성폭력범죄자들은 특성상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일반범죄자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업무 중 성폭력범죄자만을 전담하는 전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중한 범죄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성폭력범죄자들 보면 진짜 인간같이 생각도 안되고 아까도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람들이 외부 시선에 바라볼 때는 전혀 표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깊숙하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아마 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전담이 활동해야 되지, 소수의 대상자들만 딱 두고 그냥 겉으로 이 사람들 생활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만 바가지고는 진짜 모르거든요.”

(A관찰소 계장)

“서울은 보호관찰소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지역의 경우는 인원이 원래 적으니까 그렇게 하지말 전담반이 있기는 있어야겠쥬. 아무래도 그들은 양반사범에 비해서 다른 면이 있으니까.” (H관찰소 보호관찰관)

마. 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책필요

판결전조사제도는 성인의 경우는 활용이 미미하고, 소년의 경우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중에는 아래 사례에서처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미리 판결전조사단계에서 걸러져서 치료감호처분 등 이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할 사항이다.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저번에 제가 판경전조사한 분들 중에도 정신분열증환자 그런 분들은 가깝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경우로 제가 제시를 하기도 뭐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놔두게 되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시설에 두게 되면 병이 번질 확률이 높고 약한 약 확률이 높고, 또 공주치유감호소에 보내기도 그렇고 집이 좀 부유해서, 치료조건부 보호관찰이라고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I관찰소 수감집행팀장)

바. 기타 사항

여기서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나 수감을 명할 때, 대상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선택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뿐 아니라 전체 범죄자의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봉사나 수감명령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부과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사항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사회봉사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에 적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한 사회봉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그 부분은 그 이제 사회봉사도 그렇고 수강도 그렇고 대체로 그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약간 계층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중상계층은 사회봉사나 이런 건 안하는 것 같아요. 수강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회봉사도 보면 이게 교도소의 징역과 같이 생각을 해요. 어떤 노동의 습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직업이 무직이라든지 알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개 사회봉사나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어떤 교육적 훈리가 있다고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H관찰소 보호관찰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 · 제도개선방안

1. 법 · 제도 개선방안	85
2. 관련법의 실효성 강화방안	86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의의와 집행현황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나온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향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제도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법·제도 개선방안

가.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은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가족상황,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전 조사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도 당연히 해당된다. 따라서 판결전 조사제도의 성인범으로의 확대가 요망된다. 인력 및 예산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과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결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³⁶⁾.

이와 관련하여 2006년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요구한 양형조건에 관한 조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명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준비 중에 있다³⁷⁾.

36) 천진호(1999), p.70.

나. 성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 고위험군에 속하는 범죄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일반준수사항으로 관리하기에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 법 시행령 제19조 특별준수사항에 성인 성폭력범죄자가 특별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2. 관련법의 실효성 강화방안

가. 수강명령집행의 실효성 강화방안

1)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외부강사의 질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외부강사의 지원영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을 동일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강명령 집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이수 후 재범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치료교육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고급인력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강사료 확보가 이루어져야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 교육 및 치료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특히 남성교육담당자의 양성도 필요하다.

37) <http://www.pcj.go.kr>

2) 원활한 수강명령 공조집행을 위한 예산지원

각 보호관찰소가 수강명령대상자가 소수인 관계로 각 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소에서는 수 개의 기관에서 대상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조집행을 통해 수강명령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다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이것이 보다 수월할 듯하나 지방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공조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자 프로그램 운영지역을 보다 광역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폭력에 관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거나 이동수단 제공 또는 교통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3) 수강명령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단독으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장 실무담당자들은 단독명령시 사후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어렵고,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되어 단독명령이 종료되더라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당해 범죄자를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실무자의 경험에서 볼 때 단독명령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명령의 종료만으로는 재범방지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안으로 보호관찰의 병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상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대상자의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인원의 확대도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수강명령 종료이후에도 명령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내의 일정한 센터를 마련하

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교도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수강명령 종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분교육 실시 및 성폭력전담제 도입

성폭력범죄는 유형에 따라 교육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최소한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성폭력과 성인성폭력을 나누어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소아기호증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육과 치료 모두 범죄자의 특성에 맞도록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자들은 특성상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일반범죄자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만을 전담하는 전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에는 성폭력범죄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만을 전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더 중한 성폭력범죄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철저한 교육,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연계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것인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에 관한 집행기관이 보호관찰소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을 병과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제도의 효과를 잘 모르거나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집행을 신뢰하지 못해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측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으로 보호관찰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공식통계상 법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자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범죄인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의 방치는 성폭력범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성폭력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안전한 사회조성에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와 법원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구조가 이루어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집행유예만을 선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길자(2003),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비교분석」,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6),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2006.3.16.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검찰연감」. 각년도.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법무부(2005), 「보호관찰 통계연보」.
- 법무부(2006),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2006.12.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년도.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 변혜정·현혜순(2005), 「성폭력 피해자 치유·가해자교정 프로그램 매뉴얼」, 여성가족부.
- 박미숙(2002), “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전망”, 「형사정책」제17권, pp.91-111.
- 박상진·신준섭(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미국·영국·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제17권제1호, 2005.6, pp.313-336.
- 여성가족부(2006), 「2005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장규원(1999),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성인범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 국민일보 2006년 1월 19일자.
- 노컷뉴스 2004년 12월 7일자.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년 4월 18일자.
- 동아일보 2005년 3월 29일자.
- 매일경제 2006년 2월 26일자.

92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계일보 2006년 3월 21일자.

연합뉴스 2005년 4월 15일자.

<http://www.pcsr.go.kr>

<http://www.probation.go.kr>

<http://www.scourt.go.kr>

2006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28일 인쇄

200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176-5 93330

WPK
D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Tel: 02) 3156-7000(대) Fax: 02) 3156-7007

